

1 발명진흥활동 중추로 『한국발명진흥회』 설립키로

- 산하에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지적재산권 연구소도 설치·운영 -

1. 추진배경

세계적으로 80년대 이래 세계적으로 기술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특히 1993. 12.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의 내용 중에 「지적재산권 협정」(UR/TRIPS)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에 비추어,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정책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음.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기관의 평가에서도 우리의 경쟁력 수준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6위권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일신시켜야 한다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 지난 1958년 제정된 이래 전혀 개정하지 못한채 사실상 방치되어왔던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발명진흥법」을 제정(1994. 3. 24. 공포)한바 있거니와

- 이 새법의 취지를 살려 동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발명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임.

2.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 앞으로 진흥회는 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거

- 각종 발명진흥행사의 개최
- 학생발명활동의 진작
-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통한 산업계의 발명활동의 고취 등의 사업을 펴나가도록 함
- 현재의 「한국발명특허협회」(1974. 1. 11. 설립 : 민법상의 사단법인)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승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라는 “특별법상의 공익법인”화하여 발명진흥활동의 적극적인 선도역을 담당토록 하고자 함.
- 1995. 1. 1. 발족 예정임.

3. (동 진흥회 산하에) 특별사업기관의 설치·운영

- 한편, 발명진흥회의 설립과 맥락을 같이 하여,
 - 발명활동에 관련된 지원업무와
 - 지적재산권분쟁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을 담당하는 3개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산업재산권 역량을 제고토록 도모하고자 함.
- 이들 기관은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되, 각 기관의 대표(이사장)는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자동겸직토록 하여(각각의 「정관」에 명시),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기구운영의 경제성을 기하고자 함.
- 또한 설립재원은 해당분야의 산업계의 자발

적인 참여와 지원하에 설립과 운용을 하도록 추진코자 함.

가. 특허기술정보센터(발명진흥법 제16조)

기술전쟁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외 특허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 중전의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과 아울러

-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 간절한 과제임.

이에 따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특허기술 정보를 특허청의 전산시스템과 온라인망으로 연결하여

- 각 기업체나 연구소가 특허청에 일일이 오지 않더라도

- 자기 사무실에서 직접 단말기를 통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외국에서는 이미 10개년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러한 정보 공급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도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 내지 연구소 특허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설립 시기 : 1996. 1. 1.

나.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터(발명진흥법 제24조)

우리나라는 '93년도 출원건수가 155,870건에 이르러 「세계 제7위권의 출원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연구의지와 역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역력히 입증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특허출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우수특허·우수기술이 하루빨리 생산에 연결되고, 실제 산업활동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토록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우리의 발명가나 영세 기업들중에는 스스로의 사업화 능력이 없거나, “발명은 내가 할테니 사업화는 다른 사람이 해 줘야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이 알선센터에서

-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

- 제3자에게 사업화 시킨후,

- 여기서 발생하는 로얄티를(알선 센터의 운영비만 제한 후) 원권리자에게 환원시켜주는 장치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앞으로 이 알선센터는

- 통상실시권의 허여

- 산업재산권의 양도 등에 대한 매개기능

- 발명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성의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임.

설립 시기 : 1995. 1. 1.

다. 지적재산권연구소(발명진흥법 제31조)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특허·상표 제조의 증대 추세에 대처하여

- 그 원인과 유형

- 이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들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

- 정부

- 산업계

- 학계 등으로부터 선발하여

이들에게 당해과제를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상호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

- 정부의 시책은 물론

- 산업계의 대응책마련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함.

설립 시기 : 1996. 1. 1.

4. 「발명회관」의 설립

이러한 발명지원활동 내지 기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발명가나 산업계가 보다 용이하

게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발명회관』을 건립하고자 함.

현재의 잠정구상으로는 최소한

- 300평의 대지에

- 연건평 2,000평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 통합건물에

- 한국발명진흥회는 물론

- 특허기술정보센터·특허기술 사업화 알선

센터·지적재산권 연구소와

- 발명장려관

- 변리사회 등

- 유관 단체나 기관도 함께 수용하여

발명가·산업계·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지원·봉사를 해줄 수 있게 하고자 함

건립기간 : 1996~1997

2 UR 지적재산권협정(UR/TRIPS) 서명에 따른 기술개발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 그 사유와 주요착안 과제 -

1. 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나

「무한경쟁」-이것이 작금의 세계적 조류가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보다 앞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남과 다른 고유특허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첩경이 되고 있음.

더우기 1993. 12. 15. 스위스제네바에서 타결된 후, 1994. 4. 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세계각국이 서명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도 무려 73개 조문에 달하는 「위조상품 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측면의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 약칭 UR/TRIPS)이 포함되므로써, 앞으로 산업재산권 분야도 이른바 “국경없는

교역”의 시대적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한 마디로 고유기술·고유특허 내지 고유산업재산권의 확보야말로 앞으로의 국제화·지구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조건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임.

UR/ TRIPS 타결 내용과 우리의 과제

-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국제조약의 탄생으로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 세계각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강화가 불가피해 짐

국제조약상에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 강화를 명문화

- 영업비밀 보호제도 도입

- 반도체집 보호기간 연장(8년 → 10년) 등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의 국제적 통일

-현행 국제협약 : 보호기준에 대해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 → 보호기준이 나라마다 상이

-UR/TRIPs : 보호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예 : 특허권 존속기간을 출원후 20년으로 통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통합

-현행 : 산업재산권(파리협약), 저작권(베른협약, 로마협약), 반도체칩 보호(워싱턴조약) 분야별로 근거조약 상이

-UR/TRIPs : 동 협정에서 종합 규정

분쟁해결절차의 명문화로 지적재산권 침해시에 제재내용 공식 규정

-UR/TRIPs는 분쟁시 「UR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 가능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후 → 그 결정에 불복시, 회원국들의 해당제소 분야 및 타분야까지 교차 보복 가능

2. 무엇이 문제인가

지적재산권의 국제개방체제라는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계의 대응체제가 지나치게 미비 → 기업체나 연구소의 산업재산권(특히 특허·실용신안권)의 보유 기반이 너무도 취약함

가. 산업재산권 보유업체의 확산 부진(일부 편중)

등록 권리 보유 기준 현황

국내 제조업체 : 총 72,213개

제조업체의 보유실태('93. 12. 31 기준) 및 전기업 대비 비중

-4권중 1건이라도 보유한 업체 : 8,942개 (12.4%)

-특허·실용신안을 1건이라도 보유한 업체

: 2,046개(2.8%)

•특허의 경우 : 860개(1.2%)

•실용신안의 경우 : 1,586개(2.2%)

제조업체중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의 보유실태('93. 12. 31 기준) 및 그 비중

-4권중 1건이라도 보유한 업체 : 881개 (79.5%)

-특허·실용신안을 1건이라도 보유한 업체 : 476개(43.0%)

기술부설연구소 설치 기업체('93. 12. 31 현재 1,690개) 및 그 비중

-4권중 1건이라도 보유한 업체 : 412개 (24.4%)

-특허·실용신안을 1건이라도 보유한 업체 : 256개(15.2%)

•특허의 경우 : 60개(3.6%)

•실용신안의 경우 : 216개(12.8%)

나. 산업계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저조

(1)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측면

-기술개발, 기술도입의 경우 특허기술자료 조사가 필수적인데도 자료조사의 소홀로 중복 연구를 하거나, 낡은 기술 또는 중복기술을 도입하는 사례허다.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술도입 실태조사」('92)

-327개 업체 조사(1,425건 기술도입)

-79.4%가 이미 산업화로 제품 양산화란 기술도입

-1.6%가 연구개발중인 기술도입

-개발된지 6년 이상 : 55%

(2) 직부발명보상제도 실시업체의 미흡

•실시업체 : 259개(전국의 5인 이상 72천 개 제조업체의 0.31%에 불과)

(3) 산업재산권 관리체제면의 미흡

•전담부서설치업체 : 749개(전담요원 2,060명) → 전제조업체의 1% 수준

•일본의 경우(「법우회」 조사 : '92. 6)

특집뉴스

- 대기업의 해외관리조직보유 : ('80) 20%
→ ('90) 42%
- 특허전담인원 : 미쓰비시(200명), 캐논(150명), 도시바(90명), 샤프사(80명)

3. 무엇을 해야 하나

가. 기본방향

- 국민 모두의 신기술 개발·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에 대한 관심의 제고
- 특히 기업체나 연구소의 경우 의사 결정층(특히 최고경영자)부터 관심의 획기적인 쇄신
- 나아가 연구소요원은 물론 일반관리부서, 현장근무자에 이르기까지도 인식고취 제고 필요

나. 주요착안점(예시)

A. 연구개발 내지 발명활동에 착수하는 단계

-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연구 내지 기술개발결과가 있는지 여부의 조사
- 특히 선행 특허(산업재산권) 정보의 입수 및 점검은 필수적 과제임
- 이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만일 기존 특허 내지 산업재산권이 있을 때, 당해 연구나 발명은 완전히 원점에 그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함

※ 산업재산권 정보입수 방법

- 현행 : • 특허청 자료과
- 산업기술정보원(특허정보실 또는 회원가입에 의한 전산망 정보 입수)
- 지방상공회의소 자료실
- 향후 :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기술정보공급센터」를 통한 전국 온라인망 정보공급체제를 추진중임(1998년부터 활용 가능 예상)

B. 연구개발 내지 발명에 성공한 후

- 그 성공한 내용이 기존 산업재산권과는 다른 특유의 내용일 경우, 즉각 산업재산권을

확보

- 국내 : 특허청에 출원
- 국외 :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약칭 PCT) 체제를 활용하여 원하는 나라들에 대한 일괄 출원 가능

이 과정에서는 적절한 변리사에게 출원을 대리하게할 수 있으며, 출원업무는 특허청 출원과에서 담당함

C. 산업재산권을 획득한 후

- 연구개발 내지 발명활동의 성과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획득("등록")한 것은 그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 목적은 하루빨리 산업활동이나 실생활에 실용화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 실용화는 당해 산업재산권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사업화를 추진하거나

-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매각 또는 실시권의 허여를 통해 실용화 목표를 추진할 수도 있음.

※ 실용화과정에서 타인에게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경우의 상담처

-현행 : 한국발명특허협회내에 설치되어 있는 "특허기술 기업화 상담센터"와 협의

-앞으로 : (1994. 3. 24. 공포된) 발명진흥법에 의거 설립토록 특허기술사업화 추진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임

① 지원체제 :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의 신설(동법 제24조에 의거 1995년 설립 예정)

<알선센터의 사업(제24조 제2항)>

1.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알선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특집뉴스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타 산업재산권자의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술내용의 기술성·사업성의 평가제 운용

-기술성(생산기술연구원 등 기술연구소를 지정)·사업성(중소기업 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지정)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후
-그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당해 발명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추진

D. 산업재산권 전담부서의 설치·운용

• 증대되는 산업재산권업무에 대처하여 산

업체나 연구소에서는 「산업재산권 전담부서」를 두어

-연구개발 착수부터

-산업재산권의 획득과 실용화

-자신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타인의 침해 감시

-다른 산업재산권 보유자와의 공유(Cross-License) 업무 등을 담당케 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전략임을 명심할 때임.

E.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고취 내지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특허청 산하의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사업에 참가하거나

• 기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연수프로그램, 세미나, 설명회 등의 활용을 통해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지식흡수. <♣>

신상품 무료 수출지원 안내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우리 업계의 활발한 신상품 개발과 수출상품화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상품 발굴 및 수출지원 사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여러분의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획득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으로서 수출이 유망한 신규 개발 상품
- 지원 절차 및 내용 : 소정양식의 신청서류 접수, 심사 및 지원결정, 카타로그 등 상담절차 접수, 해외 81개 무역관을 통한 상품 홍보 및 해외인콰이어리 발굴, 해외 시장정보 제공 등
- 신청 접수 및 비용 : 수시로 접수하며, 신청 및 지원 관련 비용은 무료임
- 문의처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시장개척부 수출지원 2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무역회관 1304호, 전화 551-4383 / 4)

대한무역진흥공사